

군산시공고 제2012-554호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15일
군산시장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도로법」 일부 개정('08.3.21) 및 폐지('06.12.28)에 따라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개정사항 반영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법규용어를 정비하여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법」 근거조항 변경사항 개정

- 안 제1조 (제64조 및 제67조 근거조항 조문 삭제 및 제76조로 변경)
- 안 제2조제1호 (제3조 및 제4조 근거조항 조문 삭제)

※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 제76조 통합, 제3조, 제4조 ⇒ 제2조 통합

나. 「도로법」 제67조(손해자 부담금 제도) 삭제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및 삭제(안 제1조, 제2조제3호, 제9조, 제10조)

※ 도로손해자부담금 조문 삭제 및 복구원인자로 변경

다. 도로복구공사 시행주체 변경 (안 제5조제2,3항 삭제, 제5항 신설)

- 시 장 ⇒ 원인자 복구공사 시행
[단, 현장 여건상 원인자 시행이 불합리한 경우 시장이 복구공사 시행]
-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별표1에 등록된 자격있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자가 시행하도록 조항 신설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법규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군산시장 [참조 : 건설과, 군산시 시청로 1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전화 : 450-4481, FAX : 452-8172, E-mail : ngoforit@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군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을 “**도로법**”으로,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이하 손괴자부담금)”을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와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한”을 “**도로와**”로, “부속물등”을 “**부속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 라 한다)를 말한다.”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도록 하게 한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징수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제7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협정”을 “**협의**”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요청하거나 현장 여건상 원인가가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가 도로굴착 복구를 직접 시공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포장공사업 중 하나를 등록한 자가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손계자 확인의무)”를 “(복구원인자 확인 등)”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손계자 불명일 때의 조치)”를 “(복구원인자 불명일 때의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중 “손계자”를 “복구원인자”로, “추적하여 손계자”를 “추적하여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로 한다.

제11조 중 “3배이내”를 “3배 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군산시장</u> (이하 <u>시장</u> 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u>도로법</u>(이하 <u>법</u> 이라 한다)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u>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u>(이하 <u>원인자부담금</u>이라 한다) 및 <u>도로손계자부담금</u>(이하 <u>손계자부담금</u>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도로법</u> <u>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u>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도로 라 함은 도로법 제2조에서 규정한 <u>도로와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한 그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 일체를 말한다.</u></p> <p>2. (생략)</p> <p>3. 원인자 등 이라 함은 도로공사 및 도로공사이외의 공사 등 또는 행위(이하 타 공사 또는 타 행위 라 한다) 및 도로를 손계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계자 라 한</p>	<p>제2조(정의) ----- ----- -----</p> <p>1. ----- ----- <u>도로와</u> ----- ----- <u>부속물 등</u> ----- -----</p> <p>2. (현행과 같음)</p> <p>3. ----- ----- ----- <u>한다)</u> <u>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도록 하게 한자(이하 ‘원인</u></p>

다)를 말한다.

4. ~ 6. (생략)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시장은 부담금을 원인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⑦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⑥, ⑧ (생략)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 등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산출은 별표 1, 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부력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시 설손괴의 경우는 시장과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 시행) ①도로굴착에 따른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이 시행한다.

②포장도 및 보도복구는 매년초

자 '라 한다)를 말한다

4. ~ 6. (현행과 같음)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

징수할 수 있다.

⑦ -----

----- 따른다.

② ~⑥, ⑧ (현행과 같음)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

----- 따른다. -----

----- 협의-----
--.

제5조(복구공사 시행) ①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요청하거나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삭제>

에 시장이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전문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 등으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③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원인자 등이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는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

④ (생략)

<신설>

제7조(부담금의 환부)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가가 도로굴착 복구를 직접 시공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포장공사업 중 하나를 등록한 자가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부담금의 환부) -----

----- .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제9조(손해자 확인의무) (생 략)

제10조(손해자 불명일 때의 조치) 손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추적하여 손해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 등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7.12.01 조례제 311호)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 등) (현행과 같음)

제10조(복구원인자 불명일 때의 조치) 복구원인자 -----

----- 추적하여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
-----.

제11조(과태료) -----

----- 3배 이내 -----.

제13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고시 제2012-29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시외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시외자동차정류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 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3월 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경암동 614-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시외버스정류장)
 - 나. 명 치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시설명	결정(㎡)	실시계획 (㎡)	건축계획		비 고
				기존(㎡)	금회(㎡)	
자동차 정류장	시외 자동차정류장	9,940.8	7,923.6	건축: 836.57 연면적: 1,079.87	건축: 921.37 연면적: 1164.67	금회증축 84.8㎡
계			7,923.6			

4.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경암동 614-2번지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주)군산공용버스정류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2. 3 ~ 2013. 2. 28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계획실용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암	614-1	대	160.3	160.3	(주)군산 공용버스 정류장	군산시 경암동614-2			
2	경암	614-2	대	3,512.7	3,512.7					
3	경암	614-3	대	101.8	101.8					
4	경암	614-4	대	814.2	814.2					
5	경암	614-5	대	432.4	432.4					
6	경암	614-7	대	330.6	330.6					
7	경암	614-8	대	2,401.3	2,401.3					
8	경암	614-9	대	170.3	170.3					
계	8 필지			7,923.6	7,923.6					

군산시 고시 제2012-30호

군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환원 (개정동 구도아파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전라북도 고시 제2008-78호(2008.4.11)로 고시된 군산시 개정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에 대하여 전북도 토지주택과 - 25164(2011.12.26)호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환원하고 관련도서는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3월 일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환원 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환원 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환원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경(환원)	변경후	
환원	33	개정면 구도아파트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212-1번지 일원	52,958	감)52,958	-	

나. 환원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환 원 사 유
환원	33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212-1번지 일원	52,958 → 0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라 종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 - (환원)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환원 조서

가.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환원 조서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환원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91	20	집산도로	235	통사리 중1-7	통사리 대3-2	일반도로			
변경	중로	1	91	20	집산도로	240	통사리 중1-7	통사리 대3-2	일반도로			환원
기정	소로	1	361	10	국지도로	34	통사리 소1-31	통사리 중1-7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361	10	국지도로	196	통사리 대3-2	통사리 중1-7	일반도로			환원
기정	소로	1	363	10	국지도로	17	통사리 대3-2	218번지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08	10	국지도로	34	통사리 소1-31	통사리 중1-7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363	10	국지도로	200	통사리 대3-2	통사리 중1-7	일반도로			환원
기정	소로	1	378	10	국지도로	168	통사리 중1-9	통사리 소2-43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378	10	국지도로	493	통사리 중1-9	통사리 중1-10	일반도로			환원
기정	소로	1	379	10~13	국지도로	426	통사리 중1-9	통사리 중1-10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379	10	국지도로	515	통사리 중1-9	통사리 소1-30	일반도로			환원
기정	소로	2	890	8	국지도로	58	통사리 소1-30	통사리 소1-31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890	8	국지도로	108	통사리 소1-30	통사리 소1-31	일반도로			환원
신설	소로	2	891	8	국지도로	108	통사리 소1-30	통사리 소1-31	일반도로			환원
신설	소로	2	892	8	국지도로	108	통사리 소1-30	통사리 소1-31	일반도로			환원
신설	소로	2	893	8	국지도로	108	통사리 소1-30	통사리 소1-31	일반도로			환원
신설	소로	2	894	8	국지도로	66	통사리 소1-30	통사리 소1-31	일반도로			환원

▶ 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환원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환원	①	통사리공원	소공원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213-2번지	2,841	감)2,841	-	'08.4	제2종일반 주거지역

나.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환원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환원)		기정	변경 (환원)	
33	-	52,958	-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217번지 일원	39,086	-	○공동주택부지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214-8번지 일원	8,280	-	○도로부지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229-3번지 일원	1,190	-	○농수로부지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214번지 일원	2,841	-	○소공원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214번지 일원	74	-	○펌프장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181-1번지 일원	1,487	-	○중로1-10 우측 준치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경(환원)
33	1획지	용 도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
	상 동	건폐율	○ 60% 이하	-
	상 동	용적률	○ 250% 이하	-
	상 동	높 이	○ 15층 이하	-
	상 동	배 치	○ 일조권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향,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유도 ○ 지형여건, 개방감, 보행연속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 유도	-
	상 동	형 태	○ 주변 공동주택과의 조화와 시야의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6호연립 이하의 판상형 형태 권장 ○ 지붕은 경사지붕형태로 유도하되 독창적인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형태를 권장	-
	상 동	색 채	○ 주조색 : 밝고 따뜻한 2채색 이상의 혼합색 ○ 보조색 : 2채색 이상의 혼합색 ○ 강조색 : 주조색 및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색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2-31호

고 시

군산 도시관리계획(옥산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3월 일

군 산 시 장

1. 군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용도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구분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제한내용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옥산	주거	옥산면 옥산리 30	-	153,000	감)460	152,540	전북고15('83.1.29)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표시번호	구역명	구역의세분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옥산	주거	옥산면 옥산리 30	153,000	감) 460	152,540	전북고15('83.1.29)

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1) 교통시설 (도시계획시설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중로	3	55	12	국지도로	41	옥산리 1141-5답	옥산리60-4도 (대로3-55)	일반도로		전북고15('83.1.29)	

2.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 실음생략. 끝.

군산시 고시 제2012-32호

도시계획시설(학교:간호전문대) 조성계획 결정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간호전문대) 조성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관련 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3월 일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간호전문대	대학교	개정동 413-1 일원	11,006	-	11,006	전북고334 (82.12.26)	

2. 도시계획시설(학교 : 간호전문대) 조성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 성 비(%)	비 고
합 계	11,006	100.0	
교사시설	5,621	51.1	교사시설 부지
체육시설	1,148	10.4	운동시설, 운동장
조경시설	1,007	9.1	화단, 녹지 등
교통시설	2,758	25.1	도로, 주차장 등
기타시설	472	4.3	창고

2) 건축물계획 결정조서

구 분	세부시설명	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비 고
합	계	11,006	2,853	9,482	
교사시설	소 계	5,621	2,748	9,377	
	본 관 동	1,148	516	2,099	
	아 미 관	624	217	599	
	미 래 관	1,480	950	3,700	
	행 정 관	713	351	1,080	
	신 관 동	1,656	714	1,899	
체육시설	운 동 장	1,148	-	-	
조경시설	화단, 녹지 등	1,007	-	-	
교통시설	도로, 주차장 등	2,758	-	-	
기타시설	창 고	472	105	105	

3. 도시계획시설(학교:간호전문대) 조성계획 결정도서 : 실음생략. 끝.

군산시 고시 제2012-35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및 관련지번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 및 변경 된 관련지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3. 15. ~ 3. 29.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군산시 뒷고지길 37외 104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램				

○ 도로명주소 변경 : 군산시 개정면 신동화1길 36외 18건

지번주소	종전 도로명주소	변경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램					

○ 도로명주소 폐지 : 군산시 개정면 신동화1길 29외 13건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램				

○ 관련지번 변경 : 군산시 개정면 신동화1길 26외 30건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0-60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2-437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2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랐

- ▶ 기 간 : 2012년 3월 5일 ~ 3월 26일(22일간)
- ▶ 장 소 :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 기 간 : 2012년 3월 5일 ~ 3월 26일(22일간)
-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택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 제출장소 :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 제출방법 :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 (과표담당 ☎ 450-4290, 4291
주택가격상황실 ☎ 450-6155, 61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2-47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96호선, 소로2-293호선, 소로3-285호선, 소로2-295호선, 소로3-289호선, 소로3-290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3월 9일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구암동 316-116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로:소로2-296호선, 소로2-293호선, 소로3-285호선, 소로2-295호선, 소로3-289호선, 소로3-290호선)사업
 - 2) 명 칭 : 구암동 신애원앞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노 선 명	결정조서		금회 실시계획인가			미개설		비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m ²)	폭원(m)	연장(m)	
도 로	소로2-296	8.0	541	8.0	440	3,513	8.0	101	
	소로2-293	8.0	65	8.0	65				
	소로3-285	6.0	67	6.0	67				
	소로2-295	8.0	61	8.0	61				
	소로3-289	6.0	52	6.0	52				
	소로3-290	6.0	71	6.0	71				
계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2. 3. ~ 2014.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별도열람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450-4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2-559호

해망2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해망2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망2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해망2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나. 사업위치 : 군산시 해망동 998-42 일원
- 다. 사업규모 : A = 52,538㎡
- 라. 사업기간 : 2012. 4. ~ 2014. 12.
- 마. 시행자 : 군산시장

2. 열람계획

- 가. 토지조서 등 내용 : 별도열람
- 나. 열람기간 : 2012. 3. 14. ~ 3. 27. (14일간)
- 다. 열람장소 : 군산시청 재난관리과 ☎(063)450-4497
- 라. 열람내용 : 토지 등의 편입내용 등
- 마. 이의신청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등 소유자(관계인)는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서면으로 이의신청

3. 보상계획

- 가. 보상시기 : 2012. 4. ~ 2014. 12.(예정)
-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 공탁
- 다.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며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이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금액으로 보상함

2012년 3월 14일

군 산 시 장